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목적 최중증뇌병변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의 제한으로 삶의 전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서울시에 거주, 상시 일회용품(기저귀)을 사용하고 있는 최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공고일(2018.8.27)기준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연령은 모집 공고일(2018. 8. 27)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만35세 이상의 연령이 도래시 해당 연도(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월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을 첨부, 구입비 지원신청
 서울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매월 20일 지급(단, 8월분은 9월에 지급)

신청방법 및 안내

- ▶ 모집인원 : 총 2,000명
- ▶ 신청기간 : 1차 - 2018. 8. 27(월) ~ 31(금) / 수시 - 2018. 9. 1(토)~12. 15(토)
 * 1차 접수 후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일회용품 구입비용 소급지원합니다.
- ▶ 신청장소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
 * 수행기관현황은 홈페이지(<http://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
- ▶ 제출서류 :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018. 1. 1 이후 발급된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에 제출
- ▶ 선정안내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개별통보
- ▶ 문의전화 :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담당자 ☎ 02) 754-2131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 ②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비델지수 중 7. 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③ 복지카드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http://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 이란

최중증뇌병변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의 제한으로 삶의 전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며,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서울시 49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시 일회용품(기저귀)을 사용하고 있는 최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일회용품 신청자격

공고일(2018.8.27)기준 상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 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등록 1급 ~ 3급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연령은 모집 공고일(2018. 8. 27)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만35세 이상의 연령이 도래 시 해당 연도(2018.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일회용품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18.12.15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매비의 월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을 첨부, 구입비 지원신청
서울시의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인정
매월 20일 지급(단, 8월분은 9월에 지급)

일회용품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2,000명
- 신청기간 : 1차 - 2018. 8. 27(월) ~ 31(금) / 수시 - 2018. 9. 1(토) ~ 12. 15(토)
* 1차 접수 후 선정된 대상자는 8월 일회용품 구입비용 소급지원합니다.
- 신청장소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수행기관현황은 홈페이지(<http://together-seoul.org/>)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일회용품 구입비지원신청서 1부,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018. 1. 1 이후 발급된진단서), 신청서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또는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신청
- 선정안내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개별통보
- 문의전화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담당자 ☎ 02) 754-2131

〈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 ②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비밀지수 중 7. 배변조절 등급과 8. 배뇨조절등급이 1, 2급자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재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18. 1. 1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③ 복지카드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구입비용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